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 專門委員 檢討報告書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6년 8월 28일

나. 회부일자 : 2006년 8월 28일

3. 제안이유

가. 열악한 교육재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나.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코자 함

4.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로 함(안 제2조)

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함(안 제3조)

다. 계획적인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및 예산지원과 소요경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5조·제6조)

라.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제11조·제12조)

마.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교육감에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5. 검토의견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조문검토

-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입법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교육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안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계획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원하는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교육지원계획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도 교육청 및 시군과의 재정분담에 관한 규정으로 입법취지는 이해가 되나 자칫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변질이 경계되므로 안 제10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기능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안 제7조는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 바 교육지원사업 선정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기능에 해당하므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8조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평가·관리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안 제10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교육지원사업 평가와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함.
- 안 제9조는 사업 정산결과 잔액은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5조에서는 전출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바 회계규정상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안 제10조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안 제6조의 “충청북도교육청 및 시군과의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 추가 검토 필요.
- 안 제11조내지 안 제15조는 위원회 구성, 회의, 수당 및 교육협력관 파견요청,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으로 이견없음.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수반되는 바 타시도에 있어서도 교육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재정사정으로 법정경비 이외의 지원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지원조례 제정은 재정형편이 가장 좋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교육지원조례의 제정도 필요하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조례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현재 법정경비 및

임의지원경비를 포함한 지원액 규모와 조례제정시 교육지원에 소요되는 연간 수요와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